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1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 박 재 완

●대통령령 제2307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기기관”을 “국가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과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의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목적, 영업실태, 종목, 대표자의 성명 및 임원 등에 관한 사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조제1호나목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조제1호다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기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최대출자자인 자

나.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기업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자

다. 해당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대출자자인 자

라. 해당 기업의 무한책임사원

4. 법 제2조제1호라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가.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나. 기업의 연혁·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의 개황(概況), 판매명세·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채무에 관한 사항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5.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가. 법원의 금치산선고·한정치산선고·실종선고의 재판, 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 결정 및 경매개시결정·경락허가결정 등 경매와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나. 국세·지방세 또는 관세의 체납 관련 정보

다. 벌금·과태료·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

라. 사회보험료·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 관련 정보

마. 기업의 영업에 관한 정보로서 정부조달 실적 또는 수출·수입액 등의 관련 정보

바. 개인의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사망·이민·부재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사. 기업등록 관련 정보로서 설립, 휴업·폐업, 양도·양수, 분할·합병, 주식 또는 지분 변동 등에 관한 정보

아.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자.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등급,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정보 제공기록 또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회복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예금자보호법」”을 “「예금자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2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 신용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연체, 부도, 대위변제 및 대지급과 관련된 정보
2.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정보
3.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신용정보 중 법원의 파산선고·면책·복권 결정 및 회생·개인회생의 결정과 관련된 정보
4. 제2조제1항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체납 관련 정보
5.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정보 중 체납 관련 정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형태의 불이익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정보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특성, 활용용도 및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그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⑥ 제4항 각 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삭제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신용정보 등의 보고) ① 신용조회회사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수행한 다음 각 호의 업무내용을 그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대상자 및 수집·조사·처리 정보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2. 신용정보의 제공 대상자 및 제공 범위 등에 관한 사항
3. 신용정보의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 등에 관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이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용조회회사에 해당 보고내용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제5항 중 “제2조제3항”을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한다.

제27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및 반영기간(신용조회회사만 해당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마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신용정보. 다만, 같은 호 라목의 경우에는 채납 관련 정보, 자목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정보만 해당한다.

제28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제5호 중 “법 제25조제2항제1호의”를 “제2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다만,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채납 관련 정보 중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⑨ 법 제32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알리는 방법은 서면,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전자우편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법 제32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30일부터 60일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릴 것
2. 법 제32조제4항제4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30일부터 60일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릴 것. 다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수입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3. 법 제32조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60일부터 180일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릴 것

⑩ 법 제3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공시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의 게재 또는 사무실·점포 등에서 비치·열람 등의 방법에 따른다.

1. 신용정보회사등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주소 또는 거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신용정보의 특성, 제공 대상자, 제공 경위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공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법 제32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정보만 해당한다)

제34조 중 “1년”을 “4개월”로 한다.

별표 3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22조의2에 따른 신용조회회사의 보고에 대한 접수(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포함한다)

별표 4에 제9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4호의2	500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조회회사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신용조회회사가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행한 업무내용의 보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무료 열람권의 기준일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용조회회사로부터 본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용정보의 활용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신용정보회사등에 등록·관리되어 있는 신용정보로서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불이익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또는 공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통지 또는 공시는 제28조제9항 또는 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공시로 본다.

◇개정이유

신용정보주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업무감독을 확대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한 통지절차를 엄격히 하는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690호, 2011. 5.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의 종류·활용기간 및 삭제기준 등을 정하고, 신용조회회사의 보고대상업무 및 보고절차 등을 정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한 통지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안 제15조제4항 및 안 같은 조 제5항·제6항 신설)

- 1) 신용정보회사등이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 신용정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정보의 활용기간·보존기간 및 삭제 절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 2)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에 대한 관리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됨으로써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이 방지되고, 신용정보주체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안 제18조의2 신설)

- 1)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용조회회사의 세부보고사항 및 보고주기와 해당 보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권고제도를 규정함.
- 2)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감독이 가능해짐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절차 강화(안 제28조제9항 및 안 같은 조 제10항 신설)

- 1) 신용정보의 유형별로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기준·방법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사유와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 2)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절차가 보다 엄격해짐에 따라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이 방지되고, 신용정보주체의 정보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부 령

●보건복지부령 제72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8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여 고시한 규정에 따른 제출 서류[「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의 대상자만 해당한다]